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(폐기물의 투기금지 등)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0. 8. 24.

서울특별시 중구 동화동장



1. 제 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근거법규 :
 - 가. 과태료부과 :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항
 - 나. 과태료처분 전 사전통지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
 - 다. 공시송달 :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3. 공고기간 : 2020. 8. 24. ~ 2020. 9. 7. (15일간)
4. 공고대상

성 명 (생년월일)	주 소	위반내용	사전부과 통보일	과태료 금액(원)	반송사유
조*선 (720701)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0길 4*-7. 2**호(신당동)	생활폐기물 무단투기	2020.7.27.	100,000	폐문부재

5. 의견제출기한 : 2020. 9. 7.까지

- 가.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아울러,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제18조에 따라 20% 감경받을 수 있으며,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.2%의 증가산금(최대60개월)이 가산되어 최고 75%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6. 문의사항 : 중구 동화동주민센터 동정부2팀 (전화 02-3396-6864, 팩스 02-3396-8981)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